## -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을 위한 숙소(도전숙) -

# 도봉구 맞춤형 임대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공고

도봉구는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력하여 청년 창업인 육성 및 주거 안정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도전숙 공동체 주택)의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19년 8월 23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 1. 모집개요

■ 신청기간: 2019. 8. 28.(수) ~ 2019. 9. 10.(화), 총 14일간

■ 대 상: 청년창업인 (1인 창조기업인, (예비)사회적기업인, 마을기업인, 예비창업인))

■ 위 치: 서울시 도봉구 도봉2동 625-35**외** 2필지(주차: 8대)

■ 공급호수: 총 6세대

■ 임대기간: 2년(계약기간 종료전 평가에 따라 2회 연장가능, 최대 6년)

■ 주택호수별 정보 및 임대가격(공급호수: 총 6세대, 6명)

(단위 : 원)

소재지	호수	전용면적 (m²)	월평균소득 50%이하 및 자산·자동차 기준 충족		월평균소득 50%초과 ~70%이하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도봉구 도전숙(총 6호) (도봉2동 625-	201	41.35	16,100,000	209,800	26,840,000	349,700
	301	41.35	16,100,000	209,800	26,840,000	349,700
	302	38.18	15,380,000	200,400	25,640,000	334,000
35외2필지)	303	29.64	11,540,000	150,400	19,240,000	250,700

403	29.64	11,540,000	150,400	19,240,000	250,700
502	47.81	17,340,000	225,900	28,900,000	376,500

### 2. 신청자격

- 신청자격은 아래 가~라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사람
  - 모든 자격(가~라)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2019.08.23.)을 기준으로 함
    - 가. 서울특별시 거주 1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1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단독세대주 또는 단독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

- 「무주택세대구성원」: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가 속해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참조: p10)

※ 단, 단독세대주가 아닌 경우: 세대구성원 모두에 대하여 소득, 자산, 무주택여부 등을 심사하여 당첨자로 선정되면 반드시 입주시 세대를 분리하여 단독으로 입주해야 함(신청서 서명, 붙임1 참조)

- **나.** 만19세 이상 ~ 만39세 이하(2000. 8. 23. ~ 1979. 8. 24.) 청년
- 다. 공고일 현재 아래 청년창업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 ① 1인 창조기업인
  - ② 예비창업인
  - ③ (예비)사회적기업인
  - ④ 마을기업인

### ※(참고) 청년창업인 기준

구 분	청년창업인 기준
1인 창조기업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람은 제외) ※ 1인 창조기업 확인: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 > 시설·공간 >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

예비 창업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을 창업하려는 예비 창업자 ※ <u>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른 직장 근로자로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비창업자에서</u> 제외 예비창업자는 신청 시 사업계획서 반드시 제출
(예비) 사회적 기업인	모집 공고일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정의)제2항에 따른 <b>사회적기업</b> 또는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정의)에 따른 서울시 및 각 자치구로부터 <b>예비사회적기업</b>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한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종사자는 해당안됨)이 서울시 내에 소재할 것
마을기업인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행안부의 지정을 받은 마을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 <u>(종사자는 해당안됨)</u> ※ 신청인 및 마을기업의 사업장이 서울시 내에 소재할 것

### 라. 공고일 현재 아래 소득 및 자산기준(① ~ 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①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 및 자산·자동차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구분	소득 기준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비고		
	3인 이하 가구	2,700,907원 이하			
	<b>4인</b> 가구	3,082,601원 이하	<b>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b>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 합산액)		
소득	5인 가구	3,349,932원 이하			
-	※ 월평균소득은 위 가구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사·확인하는 소득으로써 근로소득(상시, 일용, 자활, 공공), 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 기타), 재산소목				
	(임대,이자),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을 말함 ※ 소득금액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로 하되, 도봉구에서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소득금액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산정한 것으로 봄				
	<u>총 자산기준 1.96억원 이하</u>				
자산	※ 총 자산가액은 부동산가액, 자동차가액, 금융자산가액 및 일반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사회복지통합망에서 조회된 자료와 다를 경우 소명자료 별도제출)				
자동차	<u> 자동차가액기준</u> 2, 499 민	<u>원 이하</u>			

②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초과 70%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구분	소득 기준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비고	
	<b>3인 이하</b> 가구	3,781,270원 이하		
	4인 가구	4,315,641원 이하	<b>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b>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 합산액)	
소득	5인 가구	4,689,905원 이하		
	※ 월평균소득은 위 가구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사·확인하는 소득으로써 근로소득(상시, 일용, 자활, 공공), 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 기타), 재산소독			
	(임대,이자),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을 말함			
	※ 소득금액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로 하되, 도봉구에서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			
	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소득금액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산정한 것으로 봄			

### 3. 신청방법

- 신청기간(신청서 및 서류제출): 2019. 8. 28.(수) ~ 2019. 9. 10.(화), 총 14일간
- 신청방법 : 이메일 신청(sheegoist@dobong.go.kr) ※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제출서류: <u>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제출</u>하여야 함
- ※ 이메일 제출 시 <u>각 서류를 개별 스캔하여 개별파일로 모아 제출하되 제목은 반드시</u>

"도전숙신청 신청인명 신청날짜"로 작성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전숙신청\_홍길동\_20190828)

※ 이메일 접수 시 전송오류 등으로 인한 신청 또는 구비서류 누락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정기간 내 미도착한 서류는 이후 도착분을 무효로 간주함

### [제출서류 목록]

신청자의 착오 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제출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 완료 후에는 수정이 되지 않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청시 제출한 서류는 계약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이관될 수 있습니다.

### ① 입주신청서 [붙임1]

※ 신청인: 청년창업인(1인 창조기업인, (예비)사회적기업인, 마을기업인, 예비창업인)

- ② 개인정보수집 및 제3자이용동의서 [붙임2]
- ③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붙임3]
- ④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각 1부(개인정보 및 주소변동사항 모두 표시)

등본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 등본으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성명, 세대주와 세대구성원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분리세대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등본 추가 제출 초본:신청자의초본으로 과거 주소변동사항,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세대주 성명 및 관계 포함

- ⑤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자 기준, 개인정보 및 주소 변동사항 모두 표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 ⑥ 청년창업인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⑦ 청년창업인 신청자별 증빙서류 제출

신청구분	증빙서류
1인 창조기업	사업자등록증, 1인 창조기업 자가진단표 출력본(아래 내용참조) ※ 1인 창조기업 확인 방법: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 > 시설·공간 >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원클릭 자격여부 확인> 자가진단한 결과(출력본) 제출
예비창업인	<b>사업계획서</b> (붙임4)
(예비)사회적 기업인	<b>사회적기업인증서</b> ※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인증서(지정서) 제출
마을기업인	마을기업인증서 ※ 없을 시 해당 관할 자치구에 확인서 발급 요청(별도 양식없음)

- **⑧ 사업계획서** [붙임4] ※ 예비창업인만 해당
- ⑨ 각종 특허, 실용실안 등록, 인증, 표창 내역 ※ 해당자에 한함
  - 벤처·유망중소기업 인증, 국·내외 공인규격·기술·프로그램 인증,
  - 지적재산권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실안, 디자인, 상표권), 저작권, 컴퓨터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권 등)) 확인서, 공공기관으로부터 상훈내역 등
- 4. 소득 및 자산 조회, 심 사

- 소득 및 자산 조회 : 2019. 9. 20.(금) ~ 2019. 11. 8.(금) ※ 신청자들의 소득·자산조회 및 소명대상자 발생 등에 따라 소요시간이 연장될 수 있음
- 소득 및 자산 소명대상자 서류 제출 : 소명대상자 개별통지

### 소득입증의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고 소득확인을 위하여 위 서류 외에 추가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득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

■ 입주자선정 심사

○ 심 사 일 : 2019. 11. 11.(월) ~ 2019. 11. 14.(목)

○ 심사방법 : 평가산정표에 근거하여 점수산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 심사기준

- 1차심사: 주민등록지, 연령, 청년창업인(1인창조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예비

창업인) 여부

### [1차심사 통과한 대상자만 → 2차심사 실시]

- 2차심사: 소득, 자산심사, 기업가치, 기술평가, 관내 기여도 등

○ 평가산정표

구 분	평가항목	배 점 (100)	점수 산정기준	
		00	200만원 초과 ~ 378.1만원 이하	5
	월평균소득기준		10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	10
	걸당산ㅗㄱ기군	20	50만원 초과 ~ 100만원 이하	15
소득 및			50만원 이하	20
자산심사 (40점)	자산보유기준 (부동산기액+자동차기액+금융자산 기액+일반자산기액-부채)	20	5,000만원 초과 ~ 1.96억 이하	5
			1,200만원 초과 ~ 5,000만원이하	10
			500만원 초과 ~ 1,200만원 이하	15
			500만원 이하	20
기술평가	특허·실용실안디지인·상표권등록	20	건당 10점	20(최고 )
(30점)	벤처·유망중소기업 인증, 국·내외 공인규격·기술,	10	해당	10

	프로그램 인증			
기업가치	1인창조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10	해당	10
(20점)	기업활동에 관한 표창	10	건당 5점	10(최고 )
관내기여도	사업장 소재가 도봉구인 경우	5	해당	5
(10 <b>점</b> )	도봉구 거주자	5	해당	5

※ **동점자 발생 시 기준**: ① 기술평가 고득점자 > ② 기업가치 고득점자 > ③ 소득 및 자산심사 고득점자 > ④ 사회적기업 > ⑤ 도봉구 연속 거주기간 > ⑥ 서울시 최종전입일 빠른순

# 5. 사전 주택공개 일<sup>'</sup>

■ 입주 신청자들 대상 주택공개 일시 (해당 일시에 주택 앞으로 오시면 됩니다)

○ 1차 공개 : 2019. 8. 30. (금), 10:00 ~ 17:00

**2차 공개**: 2019. 9. 05. (목), 10:00 ~ 17:00

※ 현장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공급주택 위치 및 입지여건 등 안내(참조: 붙임 5)

### 6. 계약조건(1인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신청자만 해당)

■ 입주대상자(1인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만 해당)는 임대차계약 전 다음의 조건을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조건 미이행시에는 선정취소 및 계약무효(계약거절) 될 수 있으며, 사업장 관련 변경사항 발생 시 해당 내용을 도봉구청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구 분	입주 조건
1인창조기업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임대주택으로 사업장 변경
예비창업자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임대주택을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 신청

※ (예비)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은 해당없음

### 7. 호수 추첨 및 당첨자 발표

#### ■ 호수 추첨

주택의 호수: 고득점자(평가산정표 산정)순 1지망 희망호수 반영
 ※ 1지망 희망호수 → 2지망 희망호수 → 3지망 희망호수 → 무작위 추첨

### ※ 참고사항(예비 입주자 선정)

예비 입주자 선정: 공급호수의 100%(6명)을 예비 입주자로 선정

- 신청자의 수가 공급호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예비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음
-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자, 공실로 발생한 세대 발생시 예비순위에 따라 공급함 (예비입주자 순위는 당첨자와 함께 게시)

공급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공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할 수 있음

예비입주자 효력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2개월(2020.11.24.)임

#### ■ 당첨자발표

- 당첨자발표 : **2019.** 11. **25. (월)** (입주자선정 심의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도봉구청(<u>http://www.dobong.go.kr</u>) 및 서울주택도시공사(http://www.i-sh.co.kr)홈페이지
- 당첨자의 주소 변경 등으로 계약안내문과 계약금고지서가 도달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신청자는 본인이 당첨 여부를 필히 확인**
-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미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당첨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 부적격자임을 통보받아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함

### 8. 계약 및 입주

■ 계약장소 :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맞춤주택부 (지하철3호선 대청역8번출구)

■ 계약기간 : 2019. 12. 9.(월) ~ 12. 11.(수) 10:00 ~ 17: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구비서류

본인	① 신분증 ② 계약자 도장(서명가능) ③ 계약금납부 영수증
나방시 나방시	※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을 이용하여 계약금을 납부하시는 경우 계좌이체
"0"	확인증 등을 출력하여 오시면 빠른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제3자	상기 "본인 내방시 구비서류" 외
대리인	-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계약시 :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내방시	- 제3자 계약시 : 위임장(신청인의 인감날인), 신청인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 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 맞춤주택부(☎02-3410-8541,8549)

■ 입주기간: 2019, 12, 12,(목) ~ 2020, 2, 11,(화)

○ 잔금납부 후 서울주택도시공사 노원도봉센터와 협의하여 입주(☎02-3399-0000)

#### 선정취소 및 계약무효(계약거절)되는 경우(주요사항 예시)

- 무주택세대 구성원, 서울시 계속 거주, 1인창조기업(예비창업자),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자격사항이 공고일이후 변경되어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 주택소유자로 검색된 자가 무주택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 계약시 제출서류를 확인한 결과 신청사실과 다르거나, 위조 등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 추후 월평균소득이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의 월평균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계약기간내 방문하여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 서류의 결격 및 미제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입주대상자 발표이후 부적격(착오에 의한 선정포함)으로 판명될 경 우 등

#### 9. 문 의 처

- 신청접수 및 입주자선정에 관한 사항 문의
  - 도봉구청 주택과(**☎**02-2091-3515)
- 계약에 관한 사항 문의
  - 어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 맞춤주택부(☎02-3410-8541,8549)
- 입주에 관한 사항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노원도봉센터(☎02-3399-0000~0001)

### 10. 유 의 사 항

구 분	내 용
신 청	<ul> <li>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못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외부 환경을 사전확인 후 신청(내부공개는 주택 공개일정 참조)</li> <li>본 공고문에 명시된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 및 그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li> <li>신청접수 기간에 접수하지 아니하면 신청 무효처리</li> <li>이메일접수로 인해 발생한 신청 누락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li> <li>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 불가능하며, 제출한 서류는 계약시 서울주택도시공사로 이관될 수 있음.</li> <li>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li> <li>주택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2019.08.23.) 현재 기준이며 입주 시까지 유지하여야 함(입주 시까지 유지하지 아니하면 입주자격 심사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li> </ul>
심 사	- 임대주택 입주신청자로서 소득기준 초과, 총자산가액 기준 초과(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 만 해당), 자동차가액기준 초과(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만 해당), 주택소유 등에 따라 부 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개별 안내된 소명기한까지 부적격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 서류를 갖추어 소명을 하여야하며, 기한 내 소명서류를 제출하여 소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 격 탈락되고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됨  -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도 소명자료로 인정되지 않을 시 부적격 탈락됨
계 약	<ul> <li>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은 2회에 한해 가능(최대 6년 거주)</li> <li>※ 단, 임대차계약기간 1년경과 후 도봉구청에서 입주기업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 및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전에 최종심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계약갱신 또는 계약 갱신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평가기간은 입주 후 알림)</li> <li>※ 입주기업에 대한 평가 등의 방법 및 일정은 추후 입주자 동의서 작성과 함께 입주자에게 통지할 예정입니다. (취업자는 입주 및 연장이 불가합니다.)</li> <li>당첨(예정)취소 및 계약거절의 경우 계약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금 반환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li> <li>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와 서류의 결격,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예비) 당첨자 된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취소)됨</li> </ul>

구 분	내 용
	- 당첨자는 입주 후 쾌적한 공동체 생활을 위한 도봉구 도전숙 관리규약 제·개정 시 동의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음
	<ul> <li>도봉구에서 입주자의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전에 입주 후 창업활동 등에 대해 심사 및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음(이 경우 입주자격 유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요구 및 창업활동 실적평가 등을 위한 자료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서류 및 자료요구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심사(평가)방법과 일정은 추후 입주자에게 통지 예정)</li> <li>입주자는 본인 사업장 변경사항 발생 시(사업자종류, 업종 등) 해당 내용을 도봉구에 통보 必</li> <li>재계약 시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주택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규정에 의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할증 또는 퇴거되며, 그 외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요건, 총자산가액 및 자동차가액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li> </ul>
	- 입주자 모집 공고일(2019.8.23.)로부터 입주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소득, 해당지역 거주, 타 시군으로 전출불가) 입주 이후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계속하 여 서울시에 거주하여야 함(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입 주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이 주택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명도하여야 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단, 계약자(그의 배우자 포함)가 아닌 세대원이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 후 세대를 분리하면 계약 및 입주 가능.
	- 관계직원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청년창업 지원업무, 기타 필요 시 임대주택에 출입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이 경우 입주자는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불응 시 계약해지 또는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음)
	- 이 주택은 양도, 전대할 수 없으며 이 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계법령, 도 봉구청 홈페이지 공고내용 등에 의함

## 11. 참 고 사 항

### 1. 무주택 세대구성원 정의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세대원」(=세대) : 아래(①~⑤) 대상자로 구성(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① 주택공급신청자
  - ②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세대 분리된 경우도 포함)
  - ③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④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⑤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 되어 있는 사람
-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를 대상으로 합니다.
- 2.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 검색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분양권등,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간주)
- 주택의 소유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3. 분양권 등
- \* 분양권등 신규계약한 경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상 공급계약체 결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 ※ 준공후 등기처리된 경우는 주택으로 처리됨
- 4.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 제외)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 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8.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 제외) 9. 매매외 상속, 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제외)

### 3.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공적자료(소득자료 출처)
근로 소득	상시 근로 소득	상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연금표준보수월액(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근로소 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 근로 소득	<ul> <li>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li> <li>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li> <li>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 가를 받는 사람)</li> </ul>	- 국세청 일 <del>용근</del> 로소득 지급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 근로 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 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 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 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 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농업 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 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사업 소득	임업 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 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 사업 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임대 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소득	이자 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3.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공적자료(소득자료 출처)
	연금 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 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 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 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 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 로복지 공단 산재보험급여, 보 훈처 보훈 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 보상급여

### 4. 총자산항목 설명(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구 분	총자산항목 설명
부동산 (토지, 건축물)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가액: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가액: 건축물의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 제외 1.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2.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3.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4.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자동차의 가역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자동차의 가액을 모두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해

1. 「장애인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자동차 2.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총자산가액 산출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 「지방세법」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지방세법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시기표준액
- 「지방세법」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기표준액
- 「지방세법」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 2.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준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 입주권 제외):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일반 자산

제

#### 부채

- 산출한 자동차가액을 포함한 총자산가액 해당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별도의 자동차가액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이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는 제외

#### 자동차

- 1. 「장애인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가액 산출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붙임 1

## 도봉구 도전숙 입주신청서

	성명(성별)				주민	등록번호		
	주민등록지							
신청인 (해당란에 작성) ※ 1인 창조기업 신청자는 반드시	세대구분 (해당란: √ 표시 세대구성원인 경우 서명란에 서명할 건)							
본인이 1인 창조기업 여부를	휴대폰번호	본인	<b>&amp;</b>			가족	2	
확인하고 신청할 것 (p4 참조)	이메일주소					희망호수	1지망: ( 2지망: ( 3지망: (	)호 )호 )호
	신청구분	1인 창조	기업	(예비)사호	회적기업	네 마을	을기업	예비창업자
	(공란에 ㅇ표시)							

	기 업 명			업종		주생산품		해당없는 경우 기재x	
	사업자등록번호								
	기업연락처				종업원 수	(대표자	제요	리 총명)	
기업개요	사업장소재지								
(1인창조기업, (예비)사회적	지적재산권 등	특 허	실	용실안	디자인 or 상표	표 저작권		기 타	
기업, 마을기업	보유현황	건		건	-	<u>거</u>	건	건	
신청자에 한함)	각종 인증내역	총건,				)			
	10 2091 1	※ 예시: 벤처·유망 중소기업 인증, 국내·외 공인규격·기술·프로그램 보유 인증 등							
	상훈 내역 (표창 등)	총건, (표창기관:							
	기업소개 (사업동기, 추진현황 등)	※ 별도 형스							
예비창업자 (예비창업자 신청자만 해당)	창업자 사업계획서(붙임 4) 작성 여부 🗆 예 🗆 아니오								
도봉구『도전숙』에 입주하고자 본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기재사항 등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취소 등의 불이익 처분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최종 입주자로 선정 시 도봉구청에서 진행하는 예비입주자 사전교육에 성실하게 참석하겠습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人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귀하								

붙임 2

### 개인정보수집, 처리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1.본인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국토해양부장관, 「임대주택법」제 38조 제 1항 및 제 3항 제3호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서울시SH공사, 동법 제38조 제3 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 선정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동법 제38조 제4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요청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복지부장관(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나.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 및 계약 관리, 임대주택의 관리, 임대주택 중복입주확인,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기본항목 : 주민등록등(초)본,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의료)보험증, 임대주택우선공급 자격정보, 입주 자 저축정보, 주택소유정보, 공공임대주택 계약 · 입주 정보
  - 소득항목: 건강보험보수월액, 국민연금소득신고액(표준보수월액),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농업 · 어업 · 임대 · 기타사업소득) · 근로소득(상시근로자소득 · 일용근로자소득 · 자활근로소득 · 공공일자리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 득 · 농업직불금, 국민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산재보험급여, 별정우체국연금급여,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사학퇴직연급급여, 실업급여, 지방세정(재산세 · 취득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세청소득금액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자산항목 : 토지·건축물 대장 및 공시가액, 자동차 등록원부·차적정보, 차량취득가액 및 차량기준가액
  - 기타항목: 기초수급대상자증명, 장애인증명, 한부모가정증명,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차상위(자활, 장애인), 차상위(한부모)
-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자]6개월 . [입주예정자]5년. [계약자]영구
- 2. 본인은 서울특별시 SH공사가 이 건 업무처리결과 및 본인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자 : 「개인정보보호법」제 2조 제 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소득·자산 및 주택 관련 원천 정보 보유기관, 임대주택법 제 19조의 3 "전산관리지정기관"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 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주택의 관리, 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임대주택 임대차계약 및 입주 이력관리
-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임대주택의 소재지(동호 포함), 임대차 계약기간
- **라.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입주예정자]6개월, [계약자]임대차 계약 기간
- 3. 본인은 위 1.~2. 항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4. 본인은 위 1.~3.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를 **학받았으며**, 세대원 전원의 동의가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SH공사가 본인의 세대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전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을 거부한다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6.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 · 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 주) 만 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 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법정 대리인(보호자)이 추가 서명함.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관계	서명(또는인) -	법정대리인 인적사항			
00	TUO국단포	게네구되리던게		대리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서명(또는인)	
	-				-		
	-				-		

[ 앞면 ]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 (외국인등	-			
	[		!	(외국인등	·국민오)			
신청자								
주 소								
2. 금융정보	보 등 제공 동의자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금융정보 등의 제공			
신청자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sup>1)</sup> (서명 또는 인)	음융성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sup>2)</sup> (서명 또는 인)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의 세대주, 신청자와 세대주의 직계존속·비속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5. 성모세경	<b>5 독석</b> : '공공수	두택 특별법」에 따른 공	공임내.	수택의 입수사	선성 시원			
			월	일				
금융기	과장 • 신용절	성보집중기관장 구	나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금융기관 등의 명칭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 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 금융정보 등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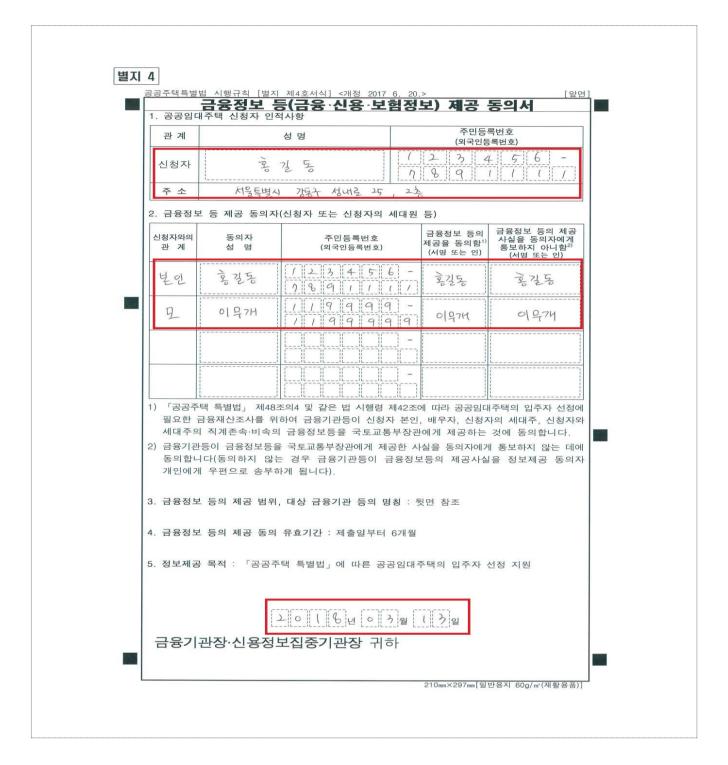
- 1. 금융정보
-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기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 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2. 신용정보
-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 3. 보험정보
-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유의사항

### 작성예시

- 1.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 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 작성방법

- ① 모든 빈칸은 자필로 기재하되, 필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또박또박 작성
- ② 2번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 부분
  - 주민등록등본 상 단독세대일 경우, 세대주 본인만 작성
  - 주민등록등본 상 2인 세대일 경우, 모든 세대원을 작성
  - 배우자가 있을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분리 세대일 경우라도 함께 작성
- ③ 첨부된 서식에서 변경 불가
  - 폰트가 깨질 경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을 따로 다운받아 작성

붙임 4

# 사 업계 획 서 (예비창업자 신청자만 작성)

지원개요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등
※ 별도 글자/	체, 크기 관계없이 자유롭게 작성
창업개요	입주 후 창업계획 등

본인은 도봉구 맞춤형 임대주택『도전숙』에 입주자로 최종 선정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임대주택을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 신청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9년 월 일

(대표)신청인: (인)

# 불의 5 공급주택 위치 및 입지여건

■ 위 치: 서울시 도봉구 도봉2동 도봉로162길 30(도봉2동 625-35외2필지)



#### ▣ 교통여건

- 지하철: 1호선 도봉역 3번출구에서 도보 5<sup>7</sup>7분 내외 소요(약 330m 거리)
- 버스중앙차선: 신도봉사거리 정류장에서 하차 도보 약 5분내외 거리 (106, 107, 108, 140, 141, 142, 150, 160, N16)
- 지역여건: 인근 도봉시장(약 70m), 북부지방법원, 검찰청, 7호선 수락산역(마을버스 약 7분)
- 주택상세: 총 5층 (1층: 주차장(8면) 및 회의실, 2~5층 총 11세대)

층별	세대수	비고
총계	11세대	
1층		커뮤니티실(43.92 m²), 주차장
2층	3세대	전용면적 30~41㎡ <b>(약11평~12평)</b>
3층	3세대	전용면적 30~41㎡ <b>(약11평~12평)</b>
4층	3세대	전용면적 30~40㎡ <b>(약10평~11평)</b>
5층	2세대	전용면적 48㎡ <b>(약14평)</b>

### ▣ 관련사진(참고)





외부 전경



외부 전경



외부 전경(출입구)

주차장(8대)



